

#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건설부공고 제227호, 1993년 12월 31일)

Architect's Business and Recompense Rule

## ◇ 추진경위

본 협회는 그 동안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보수기준을 현실화 하는 등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개정을 추진, 대한건축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92년 12월 28일 완료됨에 따라 건설부에 개정 인가를 요청(93년 1월 28일), 건축물의 유지관리상태 조사대가기준 등 추가 인가요청(93년 5월 3일)등을 거쳐 건설부가 검토하고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의 협의(93년 10월 29일)를 거쳐 지난해 12월 31일, 건설부가 인가 공고함으로써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된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은 본 협회 건의내용 대부분이 수용됐다.

## ◇ 주요내용

- 1. 기존의 요율계산체계와 달리 기존 5종으로 구분하던 건축물의 종별을 건축물의 복잡도, 설계의 난이도에 따라 단순, 보통, 복잡으로 구분(업무의 복잡도에 따라 단순건축물은 기준보수액의 10%하향조정, 복잡한 건축물은 10%상향조정→건축물설계 및 감리의 난이도 고려)
- 2. 공사감리의 비율을 35%~45%까지 대폭 상향조정(설계와 감리가 분리되는 공공공사 설계비는 55%~65%인데 비해 감리비는 45%로 설계비 파소평가)
- 3. 특별업무로 설계경기(현상설계),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따른 현황도면 작성, 특수분야의 설계, 평가, 자문조정업무 추가 신설(제4조)
- 4. 계획설계를 삭제하고 업무는 기본설계에 포함(제9조)
- 5. 공사감리의 내용을 명확히하고 견기법에 의한 시공감리내용과 동일하게 조정(제10조)

건설부장관인가: 건국시지령444. 1~59 (1966. 7. 5)  
제1차 개정인가: 도시444. 1~19053 (1968. 11. 27)  
제2차 개정인가: 건축444. 1~665 (1971. 1. 16)  
제3차 개정인가: 건설부고시 제197호 (1975. 12. 15)  
제4차 개정인가: 건설부공고 제100호 (1984. 12. 31)  
제5차 개정인가: 건설부공고 제129호 (1986. 1. 7)  
제6차 개정인가: 건설부공고 제227호 (1993. 12. 31)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타인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그 업무에 관하여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및 기타 이에 부수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건축사가 타인으로 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이 기준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의 요구)** 건축사는 수탁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업무진행상의 소요시간 이내에 제공할 것을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구체적 용도와 이에 관련된 건축주의 요구사항
2.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자료, 건축대지증명 또는 환지증명, 대지측량도(경계복원측량도를 포함한다)와 지질 또는 지내력 검사서
3. 대지에 관한 급배수, 전기, 가스 등 시

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4.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4조(저작권)**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해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하며 그 저작권은 설계도서의 인도, 공사의 실시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작성한 건축사에게 귀속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구분별로 단계적 설계를 하거나 설계 변경 또는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원작성자가 이를 단속 수행할 의사가 없거나 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에 의한 원상유지권, 개작권 및 실시권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제5조(기준의 해석)** 이 기준의 해석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해석에 따른다.

## 제2장 업무

**제6조(업무의 범위)** ①건축사가 행하는 기본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에 수반되는 조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계

2. 건축물의 공사감리

②건축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에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설계·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추가  
업무
2. 조사·기획업무
3. 특별업무
4. 건축물의 조사감정

제7조(설계·공사감리업무) ①건축물의 설  
계·공사감리업무(이하 “기본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단계별로 구  
분하여 행한다.

1. 기본설계(계획설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실시설계
3. 공사감리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등의 업무는 동  
일인의 건축사가 일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사의 공사감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 공사감리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  
여 동일인의 건축사가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중지하기로한  
때(일시 중지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와 공사감리를 별도로 분리하여  
위탁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  
생한 때
3. 해당 건축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때나  
실종 또는 사망한 때
4. 기타 이사회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설  
계 및 공사감리를 수행한 건축사가 저작  
권을 포기하여 이를 인수받은 다른 건축  
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를 수행한 경우의  
책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의 별동의  
건축물을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건  
축사는 해당 별동의 건축공사로 인하  
여 발생한 기존 건축물의 하자를 제외  
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기타 하자 발  
생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하나의 대지 안의 기존 건축물에 수직  
증축 또는 수평증축(기존 건축물에 영  
향을 미칠 경우에 한함)의 설계 및 공  
사감리를 수행한 건축사는 특별한 경  
우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존 건축물

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기본설계) 건축사가 기본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  
로부터 제공된 자료를 참작하고 건축주  
와 협의한 후 건축사 자신의 창의로서 건  
축물에 대한 기본구상을 입안하고 기본  
구상에 바탕을 둔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일반단면도
2. 건축, 구조, 설비 등의 설계설명서
3. 공사비개산서

제9조(실시설계) 건축사가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기본 설계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호의 설  
계도서중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및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문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부지안내도, 배치도, 각종 평면도, 입  
면도, 단면도, 상세도
2. 구조도(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 및  
구조계산서
3. 주차장평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  
장 설치를 요하는 건축물), 건축설비  
도, 소방설비도(소방법에 의하여 소방  
관서의 동의를 요하는 건축물), 건축  
계획서(건축에 관한 사전 결정을 신청  
한 건축물), 기타 필요한 설비설계도  
및 계산서
4. 공사시방서
5. 공사비명세서
6. 건축허가신청서

제10조(공사감리) ①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  
성한 실시설계 및 공사계약에 의하여 다  
음 각호에 계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2. 시공도 등의 적합성 검토
3.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4. 설계변경사항의 검토
5.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6. 주요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7.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파괴의 검토  
및 확인
8. 누수·단열 및 방습에 관한 시공성 검  
토
9. 공사의 확인
10. 공사비 지불 심사·확인
11. 사용검사 신청서 사용도서의 확인
12. 공사감리완료보고

②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

내용대로 시공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는 건축법 제18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합격  
되므로써 완료한다.

④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 기본  
업무 이외에 건축주의 요구가 있거나 공  
사성질 및 규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는 건  
축주의 동의를 얻어 상주감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주감리보조원의  
업무범위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주감리 보조원  
은 건축에 관한 법령이 규정하는 건축사  
의 권리 의무를 대리하지 못한다.

제11조(설계·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추  
가업무) 제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  
한 추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허가신청서 작성 이외의 대관청  
신청, 수속대리업무
2. 모형, 투시도, 사진, 영상물의 제작

제12조(감리자의 면책사유) 건축사가 공사  
감리를 하는 기간중에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행위는 건축사의 귀책행  
위로 보지 아니한다.

1. 공사시공자와 건축주간의 공사계약조  
건의 불이행
2. 공사시공자, 그 현장대리인이나 그 고  
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한 행위
3.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공사  
감리자의 감리지도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시공을 하는 행위

제13조(조사·기획업무) 제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획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획 및 경제성 검토, 전 일정의 검토
2. 자금계획 등에 관한 협력
3. 부지측량, 지반조사의 협력
4. 조사·검토에 바탕을 둔 조사보고서,  
기획설명서 등의 작성

제14조(특별업무)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  
정에 의한 특별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 설계
2. 단지계획 설계
3. 전체계획 설계(마스터 플랜)
4. 음향, 공기조화, 기계장치, 건축자재,  
구조, 설비, 에너지 기타 특별한 기술  
적 연구, 실험적 조사 또는 이화학적  
실험
5. 특수분야의 설계, 평가, 자문조정업무
6.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따른 현황 도면

작성

7. 설계경기(현상설계)

제3장 설계·공사감리업무의 보수

제15조(기본업무의 보수) ①기본업무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하되 건축물의 특성 및 건축주의 의지에 따른 기본업무 보수의 상승은 해당 금액의 1.5배 범위안에서 건축사와 건축주가 협의하여 정한다.

1. 1동의 건축물을 신축(재축,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기본업무의 보수는 공사비총액에 “별표1”의 해당 인·월수에 기준임금과 승수를 곱한 금액(이하 “기본보수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하나의 대지(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각기 규모 및 구조가 다른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기본업무의 보수는 각 동마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하나의 대지 안에 동일한 설계에 의하여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기본업무의 보수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F = A \left\{ 0.65 \left( 1 + \frac{1}{N} + \frac{1}{N} + \dots \right) \dots + \frac{1}{N} \right\} + 0.35N$$

F : 기본업무의 보수  
 A : 1동의 기준보수액  
 N : 동수

4. 동일한 설계에 의하여 각기 다른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설계업무의 보수는 1동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본보수액으로 하고, 1동을 초과하여 신축하는 때 1동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 및 배치설계도 작성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가산식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다.
5. 건축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 설계도서에 의하여 신축하는 경우의 공사감리업무의 보수는 1동마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감리보수액의 50% 상당액으로 한다.
6. 1동의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기본업무의 보수는 해당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을 신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보수액을 기본보수액으로 한다.

7. 동일한 설계에 의하여 조립식 건축물(부속되는 설비, 가구, 기구를 포함한다)의 대량 생산 판매되는 경우의 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료는 매제품의 판매가격의 0.5% 상당액으로 한다.
8. 조립식 건축물(철근 및 철골콘크리트조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 동건축물의 설계도서를 활용하는 때의 설계업무의 보수는 1동마다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보수액 중 설계보수액의 50% 상당액으로 하되 하나의 대지 안에 동일한 설계에 의하여 2동 이상의 설계를 하는 때에는 제3호에 의한 체감식을 적용한다.
9. 건축법령 규정에 의한 상주공사감리 대상건축물인 경우의 기본업무의 보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보수액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정한다.

가. 총공사비가 50억미만인 건축물 : 기준보수액에 20%

나. 총공사비가 50억이상인 건축물 : 기준보수액에 10%

②1동의 건축물에 2이상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에 있어 “별표1”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별이 2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종별에 해당하는 바닥 면적에 따라 가장 넓은 바닥 면적을 가진 종별에 속하는 건축물로 보며 각종별 해당 바닥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중 높은 요율의 종별에 속하는 건축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기본업무 인·월수 표는 당해 건축사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기본업무 보수의 조정) 건축물의 종류는 난이도에 따라 단순, 보통, 복잡으로 구분하고 기본업무의 보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하며, 조정된 인·월수는 “별표1”과 같다.

1. 단순한 건축물...기준보수액의 10% 하향 조정
2. 보통의 건축물...기준보수액
3. 복잡한 건축물...기준보수액의 10% 상향 조정

제17조(추가업무 등의 보수) 제11조 및 제13조에 규정한 추가업무와 조정·기획업무의 보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가산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품질관리시험시여부 및 그 시험성과 확인 등의 업무를 더하여 행할 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감리대가 기준에 의한다.

제18조(특별업무의 보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업무의 보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가산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제14조 제7호

의 설계경기(현상설계)에 있어 주최자(건축주)가 응모자(입찰자)에게 지급할 업무의 보수(상금)는 설계비총액의 20%이상으로 정하며, 제14조 제6호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따른 현황도면작성의 보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9조(공사비의 산출)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공사비 총액은 건축사가 설계완료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공사원가금액(해당 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산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원가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주가 재료 또는 노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되는 재료(고재인 경우에는 신재로 본다) 또는 노력을 시가로 환산하여 공사원가금액을 산출한다.

제20조(보수액의 증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보수액(이하 “소정보수액”이라 한다)에 각해당호의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1. 건축주가 2인 이상의 건축사에게 공동으로 설계·공사감리업무를 하도록 위탁한 경우에는 소정보수액의 25% 상당액. 다만, 331㎡ 이하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건축의 설계·공사감리를 위탁하되 구조, 설비, 정원, 내장, 가구 등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제3자에게 분리하여 위탁하고 건축사에게 건축의 설계·공사감리와 관련하여 전체를 종합 조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정보수액의 20% 상당액
3. 설계도서 및 공사감리업무에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병용하는 경우에는 소정보수액의 20% 상당액
4. 외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정보수액의 50% 상당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건축사와 건축주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5. 설계변경(구조, 용도, 면적, 설비, 내·외장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경우에 기준보수액의 설계업무 보수는 해당 설계변경 하는 부분을 신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건축사와 건축주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제21조(보수액의 단계별 구분) 건축사가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일괄하여 위탁을 받거나 또는 단계별로 분리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업무보수총액(제20조의 가산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구분	일괄수행		분리수행			
			법령의 규정 또는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경우		설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설계	기본설계	소정보수 총액의 25%	소정보수 총액의 25%	소정보수 총액의 25%	소정보수 총액의 20%	소정보수 총액의 20%
	시설설계	소정보수 총액의 40%	소정보수 총액의 65%	소정보수 총액의 40%	소정보수 총액의 65%	소정보수 총액의 55%
공사감리	소정보수 총액의 35%		소정보수 총액의 45%		소정보수 총액의 45%	

에는 동가산액을 포함한다)에 다음 표의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보수액으로 한다.

제22조(보수의 지급방법) ①건축사는 기본업무의 계약시에 선급금을 받으며 건축주와 협의에 의하여 업무진행기간중에 보수의 분할지급을 받을 수 있다.

②건축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수액 전액을 일시급으로 받을 수 있다.

제23조(보수 이외의 비용부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는 기본업무보수 외에 각 해당호의 정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감리보조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인건비, 현장 사무비 및 기타제경비
-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의 책임 또는 재해에 의하여 업무가 추가되는 업무의 보수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제공하여야 할 자료를 건축사에게 확보의뢰한 경우에는 그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 건축사 또는 그 보조원이 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해외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

5. 건축주가 다음 각목에 제기하는 부수를 초과하여 설계도서를 추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에 소요되는 비용

- 기본설계도서 3부
- 실시설계도서 5부
- 공사비명세서 2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4조(조사감정업무등의 보수) ①제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보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가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수액으로 한다.

②보수의 지불방법에 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실비보상가산식의 산정방법) 실비보상가산식의 보수는 다음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text{※보수액} = [(\text{직접비} + \text{간접비}) + \text{보상비}]$$

### 1.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

가. 직접인건비 :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산재보험금등을 포함한다.

나. 직접경비 : 해당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특허권사용료 포함), 제출도서의 인쇄비 또는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등의 시험검사비, 전산비, 모형제작비, 타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 등을 포함한 금액

2. 간접비 : 직접비를 제외한 제경비로서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의 인건비, 지급입차료,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비, 회의비, 공과금, 업무활동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3. 보상비 :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인건비) 본 기준에 의하여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할 인건비의 기준액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노임 단가에 준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 부 칙

- 이 기준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기준은 시행 당시 이미 계약체결된 업무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1) 다음 페이지 참조

### (별표 2)

건축물 대장의 기재에 따른 현황도면 작성 보수요율표

(단위 : 원)

구분	건축신고대상건축물	건축허가대상건축물
배치도	기준임금의 2.19%	기준임금의 6.28%
평면도1면당	기준임금의 1.46%	기준임금의 2.19%

주) —————

### 1. 도면작성원칙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제3면, “별지 제2호 서식” 제3면, “별지 제3호 서식” 제2면에 작성한다.
- ◇잉크등 지워지지 아니하는 필기구로 작성한다.
- ◇벽체는 단선으로 표기한다.
- ◇창문 표기는 하지 아니한다(단 출입구는 표기).
- ◇주요치수는 mm단위로 표시하되 축척은 임

### 2. 도면작성요령

- ◇수개층이 동일도면인 경우에는 1도면으로 작성하고 해당층 범위를 기입한다.
- ◇1층평면도는 배치도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 ◇1용지에 수개의 도면을 배치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표에 의한 대기는 도면수에 따라 산정한다.
-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 대상에 첨부되는 현황도면을 각층평면도(전유부분별 번호기입)와 전유부분 형태별 도면을 일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동 전유부분 번호와 형태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제2면에 기입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 3. 도면작성시 표시 사항

- ◇배치도 : 대지경계선, 주차장, 조경부분, 건축물 외곽선(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표시), 대지상양벽, 정화조 등 기타 주요시설물
- ◇평면도 : 내부주요 간막이 및 용도, 주요설비(승강기, 화상실 등), 내부주요치수(단, 수개층이 동일도면일 경우에는 1도면으로 작성하며 1층은 배치도에 포함하여 도면작성이 가능함)
- 4. 설계자, 감리자 또는 조사·검사 대행자가 아닌 자가 도면을 작성하므로써 실측을 하여야 하는 경우, 실측에 소요되는 경비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제25조 규정에 의한 실시보상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신고대상건축물의 경우 동 산정된 금액은 6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5. 기준임금의 산출방식은 [별표1]을 참조한다.

- ◇기준임금 : 건축사보(중급) 1일  
직접인건비×25일

